#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칙 제2호 1999.10. 6
개정 2000. 7.14
개정 2001. 7.24
개정 2002. 5.31
개정 2004. 5. 8
개정 2005. 3.21
개정 2005. 6.22
개정 2006. 3.28
개정 2007.12.18
개정 2010. 6.11
개정 2010. 6.30
개정 2011. 7.20
개정 2012. 6. 4
개정 2013. 6. 5
개정 2013. 8.13
개정 2013.12.27
개정 2014.12.23
개정 2015. 5.20
개정 2016. 2.24
개정 2019. 2.18
개정 2019. 5.10
개정 2019.12.24
개정 2020.12.2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사업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란 기금사업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기금사업”이란 법 제22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자금”이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배정받은 기금으로서 관리청의 지출원 등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4. “기금운용계획”이란「국가재정법」제66조,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한 계획을 말한다.
5. “기금예산”이란 위원회로부터 배정받은 기금으로서 재무관 또는 관리청의 경리관 등이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6. “관리은행”이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와 계약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7. “환경기초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등을 말한다.
9. “관리기구”란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0. “전담관리기구”란 제9호에 따른 기구 중「수도법」제8조에 따른 관리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 위원회는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운용하되, 안정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원칙)** 기금의 회계처리는「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위원회의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기금사업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자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국고금관리법」제34조제1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라「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청은「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등 법령의 규정,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기금운용규칙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기금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금예산을 당초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회는「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0조(기금관리계정 등의 설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은행에 기금관리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리청은 기금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재원과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관리를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장 기금사업 구분 및 기금의 지원

**제11조(기금사업의 구분 및 지원)** ①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금을 지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가. 관리청별 주민지원
   나.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
4. 제12조의3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지원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사업
7. 제13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사업
8. 기본경비
   가. 기금관리비(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른 사무국 운영경비)
   나.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비
   다. 법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9. 제13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지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10. 제13조의5에 따른 정수비용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중 제2호의 사업은 제3호부터 제10호의 사업에 우선하여 기금예산을 배정한다.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비는 기금의 규모, 전년도 주민지원사업비에 반영된 규제지역 면적 및 주민지원대상자 증감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사업)** ①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1.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2.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대상지역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강수계지역 중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임진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1.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환경부 소관 보조금을 말한다)의 교부가 결정된 사업
2.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으로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하수관로 사업
3. 「물환경보전법('14.3.24.)」 이전에 조성한 산업단지 관련 완충저류시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및 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의 대상별 지원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의2(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 ①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사업
2. 수변녹지조성 및 관리사업

② 제1항의 기금사업 대상지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매수대상지역으로 한다.

③ 제1항 1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사업 중 토지매수 사업비는 당해연도 기금 총규모의 20% 이내로 한다.

**제12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지침』에 따른다.

**제13조(수질개선지원사업)** ① 수질개선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1.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2. 환경기초조사 및 연구지원사업
3.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4.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사업
6. 생태하천복원사업
7.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
8.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9. 하천구역에서의 비료·농약 사용제한에 따른 경작자의 손실보상사업
10. 그밖에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② 삭제<2011.6.00>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지원한다.

1. 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가. 전담관리기구에 대하여는 인건비 일체 및 관리비용
   나. 가목 외의 관리기구에 대하여는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기타 일용직 인건비 및 관리비용
2. 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가. 상수원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비용
   나.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중·소하천 유역의 수질개선사업 비용
   다. 기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비용

④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지역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의한 수생태계복원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35를 지원한다.

⑤ 환경기초조사 및 연구사업은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유역관리기법을 보완·지원하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⑥ 퇴적물준설사업은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⑦ 수질자동측정망감시장치 설치·운영사업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한정하여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비용의 100분의 70을 지원한다.

⑧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의2(비점오염저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비점오염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3조의3(오염총량관리)** ① 오염총량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1. 오염총량관리사업
2.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② 오염총량관리사업은 영 제11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③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사업은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설치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4(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①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폐수배출시설 중 공공정수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13조의5 (정수비용 지원사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14호에 따른 정수비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14조(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비용 교부)** ①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정하며, 물이용부담금이 기금으로 납입된 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부과·징수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교부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영 제22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비용의 교부를 유보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지원에 관한 특칙)** 제11조부터 제13조의5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업의 대상 및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금수입의 차질 등으로 기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가 제1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전에 미리 기금사업의 대상 및 지원조건을 달리 의결한 경우
3. 제41조에 따른 기금사업의 성과평가가 부진할 경우

## 제3장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16조(기금사업계획 수립 지침의 작성·통보)** ① 위원장은 제17조에 따른 다음연도 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하 “기금사업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업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총규모
2.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및 지원규모
3. 기금사업의 대상 및 지원조건

**제17조(기금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제16조에 따른「기금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15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및 타당성
2. 수질개선의 기여도
3. 사업기대효과

**제1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위원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조정한 후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국가재정법」제66조 및 제68조에 따라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지침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우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추후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때 반영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관리청이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세부항목(세항, 세세항, 목 등을 말한다)의 지출금액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기금사업계획 변경

**제20조(기금예산의 배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기금운용계획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산 이월액은 기금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수입 차질 등 기금운용 여건의 변화와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변경될 경우 위원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예산의 배정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예산의 이월)** ① 사무국 및 관리청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3.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으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계속비

4.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③ 사무국 및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때에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이월할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이월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연도말의 기금예산 지출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예산 배정의 취소)** 위원장이 제20조에 따른 기금예산 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금사업에 대한 기금지원기준에 의한 지방비를 매 회계연도 개시 6월 이내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제19조에 따른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변경한 경우
4.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기금사업을 취소 또는 중단한 경우
5. 기금예산이 배정된 후 1년 이내에 당해 기금사업의 기본·실시설계 또는 시설공사가 착수되지 않을 경우
6. 기타 기금사업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제4장 기금의 수입

**제23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부과·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체납 및 감면 등 부과·징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수도법」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4조(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물사용량 산정)** ① 수도사업자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체 취수량 중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 사용량 비율(이하 “혼합비율”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혼합비율 승인 대상 수도사업자는 전년도 취수원별 취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매년 1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수원별 일반현황
2. 광역상수도 원·정수 사용계약서 사본 및 용수대금 지급 증빙서류
3. 취·정수장 운영일지 또는 용수유입일지 사본 등
4. 기타 위원장이 혼합비율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혼합비율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승인 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혼합비율을 당해연도 물 사용량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기금 납입)** ① 수도사업자는「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하여금 물이용부담금이 수납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은행에 설치된 기금계좌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결과를 납부일 다음날까지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매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위원회의 수질개선특별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수도사업자가 물이용부담금의 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의 납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자는 물이용부담금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26조(물이용부담금의 환급)** ① 수도사업자 및 위원장은 과오납된 물이용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과오납금 처리절차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이 과오납 결정 금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물이용부담금 수납)** ① 관리은행은 「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이하 “전용수도설치자”라 한다) 및 「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이하 “하천수사용자”라 한다)가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용이하게 납입할 수 있도록 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와 자동이체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관리은행은 물이용부담금 및 기타 반납금 등 기금 수입내역에 대하여 매 15일마다 마감한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조사)** ① 위원장은 수도사업자, 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기금의 납입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 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는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① 수도사업자, 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 및 관리은행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대장에 부담금 징수 및 환급금 지출사항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매월 수입을 마감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입 징수보고서 및 물이용부담금 수입· 징수내역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기금의 지출

**제30조(월별자금배정계획의 작성)** ①「국가재정법」제66조 및 제6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사무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별 수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월별 자금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까지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12월 15일 이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이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월별수입계획서와 월별자금지출계획서를 작성하고 국회 의결시 기금운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월별수입계획서와 월별자금지출계획서를 토대로 월별자금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자금배정의 요구)** ① 관리청은 세항·목·단위사업별 소요내역이 포함된 다음달 자금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당해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관리계획'에 따른 기한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자금배정을 요구할 때에는 기금사업의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다음달의 실지출 소요 금액만을 요구하여 자금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비 등의 부담을 수반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최초 자금배정을 요구할 때에는 지방비 등의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서류 또는 지방비 등의 확보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금의 배정)** ① 사무국장은 제31조에 따라 관리청의 자금배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월별자금배정계획 및 관리청의 기금사업 추진현황과 자금현황을 고려하여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여건변화로 당초보다

지출을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당겨 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의 자금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배정을 유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제2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입 차질 등 기금의 관리·운영 여건 변화로 자금배정을 일시 유보하여야 할 경우
3. 기금예산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한 경우 이미 자금이 배정된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4. 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회피하는 경우
5. 제31조제3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기금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자금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제37조에 따른 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8. 제41조에 따른 기금사업의 성과평가가 부진할 경우

**제33조(자금의 집행관리)** ① 기금의 자금 집행은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기금사업의 시행여건 변화로 기금사업별로 배정받은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한도내에서 해당 기금사업으로 배정받은 자금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자금집행실적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당해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관리계획'에 따른 기한 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금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자금집행상황을 제32조에 따른 매월 자금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관리청의 기금 집행)** ① 관리청은「지방재정법」및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회계가 설치된 관리청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은 관리청은 그 배정받은 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6장 기금의 결산

**제35조(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제출)** ①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국가회계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기금 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관리청의 기금 결산)** ① 관리청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금의 결산을 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회계가 설치된 관리청은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안) 및 이에 따르는 부속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4월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7조(자금 집행잔액 반납)** ① 관리청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자금 집행잔액(불용액)을 다음 회계연도 10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금관리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를 설치한 관리청은 매 회계연도 기간동안 금융기관(금고은행을 포함)에 예치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법 제22조 각 호 및 영 제28조 각 호에 의한 기금사업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제39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44조에 따른 위원회 계정의 회계기관은 제21조에 따른 매 회계

연도의 자금집행잔액(이월액, 불용액)과 금융기관(금고은행을 포함)에 예치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매 회계연도 말까지 기금관리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사업의 수행실적 보고)** ① 사무국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사업의 수행실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기금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취소·중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기금사업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의2의 기금사업은 보조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보조사업 추진 실적 보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이 완료된 경우
2. 제22조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배정이 취소된 경우
3. 기타 기금사업이 재정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

**제39조(기금사업비의 정산)** ① 위원장이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사업 완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기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의 목적에 적합성 및 다른 용도에 사용 여부
2. 기금사업의 기금집행 세부내역 적정성
3. 사업준공조서 및 지출원인행위부·지출부 등의 기금사업 집행 증빙서류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미 배정된 기금자금이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그 기한을 정하여 초과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기금사업이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및 예산을 초과하여 자금이

배정된 경우에는 금고은행(금융기관을 포함)에 예치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항에 따른 초과 금액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금고은행을 지정할 때 약정한 금리 또는 금고은행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에 해당하는 금리수준으로 산정한다.
2. 이자 산정 기간은 당해 기금사업의 자금이 배정되어 금고은행에 예치된 다음날로부터 계정에 반납된 전일까지로 한다.

**제40조(기금 등의 반환)** ① 관리청은 제39조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기금과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배정할 자금과 그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 제7장 기금운용의 평가

**제41조(기금의 성과평가)** ① 위원장은 기금의 운용·관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등으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기금 운용·관리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관리의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성과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2. 성과평가 목표 및 사업별 성과지표
3. 성과평가 항목 및 평가 등급
4.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평가자료
5. 평가결과 활용(조치) 계획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타 기금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42조(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 ① 관리청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기금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말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예산서, 결산보고서 및 이에 따르는 부속서류
2.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관계 증빙서류 사본
3. 기타 사무국장이 정하는 관계 서류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제출하는 관계 서류가 미흡하거나 기금사업의 추진현황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과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청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기금의 집행과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 제8장 기금의 회계기관

**제4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위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이하 “기금회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하고, 그 직위·성명과 임명 연·월·일이 포함된 인감조사를 지체 없이 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 : 유역관리부장
2. 기금출납관 : 재정계획과장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수입징수 및 지출결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기금출납관은 제2항에 따른 지출결의에 따라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위원회계정의 회계기관, 분임회계기관을 포함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44조(위원회계정의 회계기관)** ① 위원회계정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자금출납명령관 및 자금출납관(이하 “위원회계정의 회계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금출납명령관은 사무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금월별지출계획서의 작성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월별자금배정의 요구
3. 지출원인행위
4. 기타 위원회에 귀속된 재산의 관리

③ 자금출납관은 사무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출행위
2. 기타 위원회에 귀속된 물품 등의 출납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기관은 사무국장이 지정한다.

⑤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는 위원회계정의 회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계정의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5조(기금집행의 방법 및 절차)**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출결의를 한 경우에는 관리청별·기금사업별 등 지출결의의 관계서류를 기금출납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결의의 관계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급지시서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출은 사무국 및 관리청이 지정한 별도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에 의한다.

④ 관리은행이 제2항에 따라 기금출납관으로부터 지급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즉시 사무국 및 관리청이 지정한 별도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지급필통지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출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출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기관의 분립)**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회계기관은 서로 겸할 수 없다.

**제47조(회계기관의 인수인계)** 기금회계기관의 인수인계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에 따른 업무인수인계의 예에 의한다.

**제48조(장부의 비치 및 작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입징수 및 지출결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지출에 관한 장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부 및 그 보조부에 관한 서식은 사무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장 기금의 부정사용 신고에 대한 포상

**제49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사무국장은 기금에서 지원된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사무국, 관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관련자(공무원 등)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0장 보 칙

**제50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법과 사무국장이 정하는 지침·기준에 의한다.

**제51조(시행지침)**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지침·기준으로 정한다.

## 부 칙 <2006.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07.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별표]는 2008년 예산부터 적용하되,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지원비율 중 소규모하수도는 2008년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하기 전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 부 칙 <2010. 6. 11>

제1조(시행일 및 적용특례)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1〕 1.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비율

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 소규모하수도 | 하수관거 |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
| 지방비의 80% | 지방비의 80% | 지방비의 80% | 지방비의 80% | 지방비의 80% |

비고 1. 제12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하수관거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24 (특별대책지역 외의 총사업비에 대한 기금지원비율)을 지원한다.

나. 2013년 1월 1일 이후

이 규칙 시행

다. 다만, 가, 나목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예산이 편성된 계속사업의 경우는 종전 규칙대로 적용한다.

2. 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1〕 2.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

| 기본지원 비율 |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차등지원비율 | | 전년도 대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 | | 최종 지원비율 |
|---|---|---|---|---|---|
| 60% | 20% 미만 | 10% 추가지원 | 10% 이상 | 10% 추가지원 | 80% |
| | | | 5-10%미만 | 10% 추가지원 | 80% |
| | | | 5% 미만 | 10% 추가지원 | 80% |
| | 20% 이상, 40% 미만 | 5% 추가지원 | 10% 이상 | 10% 추가지원 | 75% |
| | | | 5-10%미만 | 10% 추가지원 | 75% |
| | | | 5% 미만 | 10% 추가지원 | 75% |
| | 40% 이상 | - | 10% 이상 | 10% 추가지원 | 70% |
| | | | 5-10%미만 | 10% 추가지원 | 70% |
| | | | 5% 미만 | 10% 추가지원 | 70% |

비고 1. 팔당호수질보전대책지역 내의 경우 지원금액의 5%를 추가 지원한다.

2. 운영비 지원대상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한한다.

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이 규칙 시행

## 부 칙 <2010. 6. 30>

제1조(시행일 및 적용특례)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1〕 1.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비율

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 소규모하수도 | 하수관거 |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
| 지방비의 80% | 지방비의 80% | 지방비의 80% | 지방비의 80% | 지방비의 80% |

비고 1. 제12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하수관거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24 (특별대책지역 외의 총사업비에 대한 기금지원비율)을 지원한다.

나. 2013년 1월 1일 이후

이 규칙 시행

다. 다만, 가, 나목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예산이 편성된 계속사업의 경우는 종전 규칙대로 적용한다.

2. 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1〕 2.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기본지원비율 |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차등지원비율 | | 전년도 대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 | | 최종지원비율 |
|---|---|---|---|---|---|
| 70% | 30% 미만 | 5% 추가지원 | 5% 이상 | 5% 추가지원 | 80% |
| | | | 3-5%미만 | 5% 추가지원 | 80% |
| | | | 3% 미만 | 5% 추가지원 | 80% |
| | 30% 이상, 40% 미만 | 3% 추가지원 | 5% 이상 | 5% 추가지원 | 78% |
| | | | 3-5%미만 | 5% 추가지원 | 78% |
| | | | 3% 미만 | 5% 추가지원 | 78% |
| | 40% 이상 | - | 5% 이상 | 5% 추가지원 | 75% |
| | | | 3-5%미만 | 5% 추가지원 | 75% |
| | | | 3% 미만 | 5% 추가지원 | 75% |

비고 1. 팔당호수질보전대책지역 내의 경우 지원금액의 5%를 추가 지원한다.

2. 운영비 지원대상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한한다.

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이 규칙 시행

## 부 칙 <2011.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별표1] 비고4는 2013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3.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별표1] 비고4는 2014년 기금운용계획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 칙 <2013. 12. 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별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하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중 재정자립도 반영비율은 2015년 이후 재검토 한다.

## 부 칙 <2015.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 집행잔액 반납) 제37조제2항 개정사항은 이 규칙 개정 이후 완료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2호는 2020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9.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12. 23>

이 규칙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2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비 지원비율

(제12조제4항 관련)

## 1.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비율

| 공공하수처리시설 | 소규모하수도 | 하수관로 |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완충저류시설 |
|---|---|---|---|---|---|
| 지방비의 60% | 지방비의 60% | 지방비의 60% | 지방비의 60% | 지방비의 60% | 지방비의 70% |

비고 1. 제12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하수관로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24(특별대책지역 외의 총사업비에 대한 기금지원비율)을 지원한다.

## 2.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 구 분 | | 지원비율 |
|---|---|---|
| 기본지원비율 | | 60% |
| 재정자립도 반영비율 | 30%미만 | +15% |
| | 30%~40% | +10% |
| | 40% 이상 | +5% |
| 전년대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 5%이상 | +5% |
| | 3%~5%미만 | +3% |
| | 1%~3%미만 | +1% |
| | 1%미만 | - |
| 하수도법 위반사항 (시설별, 건별) | 방류수수질기준초과 | -2% |
| | 미처리하수방류 | -6% |

비고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의 경우 지원비율의 5%를 추가 지원한다.

2. 전년도 대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0% 이상은 5%, 40% 이상~50%미만은 3%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3. 운영비 지원대상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수관로로 한다.

4. 하수도법 위반사항 감액은 기금 신청연도 기준 최근 2년간의 시설별, 건별 실적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기 금 수 입 통 보 서

수 신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발 신 :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장 (인)

년 월 일

| 수입일자 | | | 적 요 | 금 액 | 비 고 |
|---|---|---|---|---|---|
| 년 | 월 | 일 | | | |
| | | | | | |
| 합 계 | | | | | |

〔별지 제2호서식〕

| 회 계 | 한강수계관리기금 | 기 금 수 입 부 | 일선관서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
| 소 관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 해당년월 | |

| 관 | 항 | 목 | 과목명 | 세입예산액 | | 징수결정액 | | 수 납 액 | | 불납결손액 | | 미수납액 |
|---|---|---|---|---|---|---|---|---|---|---|---|---|
| | | | | 당월분 | 당월까지의 누계 | 당월분 | 당월까지의 누계 | 당월분 | 당월까지의 누계 | 당월분 | 당월까지의 누계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월 별 수 입 계 획 서

(단위 : 백만원)

| 관 | 항 | 목 | 예산액 (A) | 1분기(B) | | | | B/A (%) | 2분기(C) | | | | C/A (%) | 3분기(D) | | | | D/A (%) | 4분기(E) | | | | E/A (%) | 비고 |
|---|---|---|---|---|---|---|---|---|---|---|---|---|---|---|---|---|---|---|---|---|---|---|---|---|
| | | | | 1 | 2 | 3 | 계 | | 4 | 5 | 6 | 계 | | 7 | 8 | 9 | 계 | | 10 | 11 | 12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 월별자금지출계획서

분류번호 년 월 일

받 음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보 냄 : 인

(단위 : 백만원)

| 항 | 세항 | 예산액(A) | 1분기(B) | | | | B/A (%) | 2분기(C) | | | | C/A (%) | 3분기(D) | | | | D/A (%) | 4분기(E) | | | | E/A (%) | 비고 |
|---|---|---|---|---|---|---|---|---|---|---|---|---|---|---|---|---|---|---|---|---|---|---|---|
| | | | 1 | 2 | 3 | 계 | | 4 | 5 | 6 | 계 | | 7 | 8 | 9 | 계 | | 10 | 11 | 12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자 금 요 구 서

(　　년　　월분)

년　　월　　일

분류번호

받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보냄 :　　인

(단위: 백만원)

| 항 | 세항 | 목<br>(단위사업) | 본년도 예산액① | | | 전년도<br>이월액<br>② | 예산현액<br>①+② | 기배정액 | | 자금요구액 | |
|---|---|---|---|---|---|---|---|---|---|---|---|
| | | | 예산액 | 예 산<br>증감액 | 계 | | | 전월말배정누계<br>(이월금배정액) | 지출액누계<br>(이월금지출액) | 금회요구액<br>(이월금요구액) | 소요<br>내역 |
| | | | | | | | | | | | 별첨 |
| **합계** | | | | | | | | | | | |

※ 전년도이월액의 자금배정액과 요구액은 괄호 안에 별도 표기

※ 소요내역은 별지로 작성하되 사업추진현황을 반드시 기록하여 자금요구

예) 현재 공정률 50%, 기성금 50,000천원 지급(11월 25일)

〔별지 제6호서식〕

**산 출 근 거**

1.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 | | | | |
|---|---|---|---|---|
| 납 부 번 호 | | | | |
| 회 계 연 도 | | 회 계 | 소 관 | 기금관리계좌 |
| | | | | |
| 납부자 | 성 명 (상 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납 기 내 납부기한 | | 년 월 일 | 신고분 | 원 |
| | | | 가산금 | 원 |
| | | | 중가산금 | 원 |
| | | | 납기내금액 | 원 |
| 납 기 후 납부기한 | | 년 월 일 | 중가산금 | 원 |
| | | | 납기후금액 | 원 |

위 금액을 가까운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기금출납명령관(인)

수납인

---

**안 내 말 씀**

1.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수납기관용)

| | | | | |
|---|---|---|---|---|
| 납 부 번 호 | | | | |
| 회 계 연 도 | | 회 계 | 소 관 | 기금관리계좌 |
| | | | | |
| 납부자 | 성 명 (상 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납 기 내 납부기한 | | 년 월 일 | 신고분 | 원 |
| | | | 가산금 | 원 |
| | | | 중가산금 | 원 |
| | | | 납기내금액 | 원 |
| 납 기 후 납부기한 | | 년 월 일 | 중가산금 | 원 |
| | | | 납기후금액 | 원 |

위 금액을 가까운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기금출납명령관(인)

수납인

［별지 제7호서식］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보　　냄 :

# 00년 0반기 기금사업 추진실적 보고

## 1. 사업명 :

※ 실제 사업명 및 대분류-중분류(예: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한강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의한 사업명 기재

## 2. 사업개요

ㅇ 위　　치 :　　(수계 : 00천→한강)

ㅇ 사 업 량 : (시설규모, 사업구간, 연장 등)

ㅇ 사업기간 :　　(착공일 :　　, 준공예정일 :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기금 :　　, 지방비 :　　)

ㅇ 사업내용 :　※ 단위세부사업별 사업물량 등을 기재

## 3. 사업추진현황

| 계　획 | 실　적 | 비　고 |
|---|---|---|
| ※ 일정별(월, 분기) 단위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4.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예산현액① | | | 지출원인행위액② | 지출액③ | 잔　액 | 집행율 | |
|---|---|---|---|---|---|---|---|---|
| | 전년도 이월액 | 예 산 | 계 | | | | ②/① | ③/① |
| 계 | | | | | | | | |
| 국 고<br>기 금<br>지방비 | | | | | | | | |

주)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은 누계액을 기재

## 5. 사업부진사유 및 대책

※ 구체적으로 기재

## 6. 향후추진계획

［별지 제8호서식］

# 기금사업 완료 보고서

## Ⅰ. 사업명

## Ⅱ. 사업개요

ㅇ 위　　치 :　　(수계 또는 방류수역 : 00천→한강)
ㅇ 사 업 량 : (시설규모, 사업구간, 연장 등)
ㅇ 사업기간 :　　(착공일 :　　, 준공일 :　　)
ㅇ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기금 :　　지방비등 :　　)
ㅇ 처리구역 : (읍·면, 동·리)
ㅇ 처리방법 또는 공정도

## Ⅲ. 추진경위

ㅇ oo년oo월oo일 ○○사업계획 수립·인가(승인)
ㅇ oo년oo월oo일 ○○부지 매입 착수 및 완료
ㅇ oo년oo월oo일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ㅇ oo년oo월oo일 ○○공사 발주
ㅇ oo년oo월oo일 ○○공사 계약 체결
ㅇ oo년oo월oo일 ○○공사 착공·완료
ㅇ oo년oo월oo일 ○○시운전·정상가동

※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추진경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Ⅳ. 총사업비 현황

1. 예산 현황

(단위 : 원)

| 연도별 | 계 | 국　고 | 기　금 | 지방비 등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집행 현황

(단위 : 원)

| 연도별 | 예산 현액 | |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전년도이월 | 예 산 | 계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불용액 발생사유를 기재

3. 집행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 계 | '00 | '00 | '00 | '00 |
|---|---|---|---|---|---|---|
| 합 계 | | | | | | |
| 1. 토 지 매 입 | | | | | | |
| 2. 설 계 용 역 | | | | | | |
| ○타당성조사 | | | | | | |
| ○기본 및 실시설계 | | | | | | |
| 3. 시 설 공 사 | | | | | | |
| ○ 토목건축공사 | | | | | | |
| - 도 급 | 시설공사 | | | | | |
| - 관 급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공사 | | | | | | |
| - 도 급 | 설치공사 | | | | | |
| - 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 | | | | | | |
| ○ ○○공사 | | | | | | |
| 4. 책 임 감 리 | | | | | | |
| 5. 시설부대비 | | | | | | ` |

## Ⅴ. 총사업비 정산 관련 첨부할 증빙서류

1. 공사설계내역서 및 공사설계 예산서(변경 도서 포함) 각 1부
2. 준공검사내역서 1부
3. 공사도급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사본 1부
4.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사본 각 1부 또는 지출결의서 사본
5.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공사현장 사진 등)

〔별지 제9호서식〕

## 지 급 지 시 서 No.

수 령 자 :

지급과목 :

| 금 |
|---|

( ₩ )

상기 금액을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 .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농협하남시지부 귀중

〔별지 제10호서식〕

## 지 급 필 통 지 서 No.

수 령 자 :

지급과목 :

| 금 |
|---|

( ₩ )

상기 금액을 수령자에게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농협 하남시지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 수 입 징 수 결 의 서
## (년도 수입)

| | | | |
|---|---|---|---|
| 결의서 번호 | | 관 | |
| 회 계 | | 항 | |
| 소 관 | | 목 | |
| 수입징수관 | | | |

| | | | |
|---|---|---|---|
| 결의일자 | | 최초 결의일자 | |
| 납부기한 | | 결의금액 | 원 |
| 가산(연체)과목 | | 가산(연체)율 | % |
| 가산(연체)과목명 | | | |
| 납기 후 기한 | | 납기 후 금액 | 원 |

| | |
|---|---|
| 건 명 | |
| 부과근거 | |
| 산출근거 | |

| | | | |
|---|---|---|---|
| 납부자명 | | 납부자 실명확인번호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 승인일자 | 기금출납명령관 |
|---|---|
| | |

〔별지 제12호서식〕

| 회 계 | 한강수계관리기금 | 수 입 징 수 부 | 수입징수관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
| 소 관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 해당년월 | |

| 수입일자 | | | 납부자명 | 적 요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년 | 월 | 일 | | | | | | |
| | | | | | | | | |
| 월 계 | | | | | | | | |
| 월 계(현년도) | | | | | | | | |
| 월 계(과년도) | | | | | | | | |
| 누 계 | | | | | | | | |
| 누 계(현년도) | | | | | | | | |
| 누 계(과년도)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table>
<tr><td>회 계</td><td colspan="3">한강수계관리기금</td><td colspan="3" rowspan="2">원 인 행 위 부</td><td>일선관서</td><td colspan="2">한강수계관리위원회</td></tr>
<tr><td>소 관</td><td colspan="3">한강수계관리위원회</td><td>해당년월</td><td colspan="2"></td></tr>
<tr><td>일 자</td><td>항</td><td>세항</td><td>목</td><td>세목</td><td>예 산 액</td><td>적 요</td><td>원 인 행 위 액</td><td>수 령 인</td><td>비 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td><td>원인행위 총액</td><td></td><td colspan="2"></td></tr>
</table>

〔별지 제14호서식〕

<table>
<tr><td>회 계</td><td colspan="2">한강수계관리기금</td><td colspan="5" rowspan="2">지 출 부</td><td>일선관서</td><td colspan="3">한강수계관리위원회</td></tr>
<tr><td>소 관</td><td colspan="2">한강수계관리위원회</td><td>해당년월</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일 자</td><td rowspan="2">번 호</td><td rowspan="2">항</td><td rowspan="2">세항</td><td rowspan="2">목</td><td rowspan="2">세목</td><td rowspan="2">적 요<br>수 령 인</td><td colspan="3">지 출</td><td rowspan="2">비 고</td></tr>
<tr><td>전 월</td><td>금 회</td><td>누 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전 월 합 계</td><td colspan="5"></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당 월 합 계</td><td colspan="5"></td><td colspan="4">총 계 :</td></tr>
</table>